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분뇨·하수·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인상하여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분뇨·하수·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장려수당을 월15만원에서 월25만원으로 인상

4. 참고사항

-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(〔별표9〕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)
- 지방공무원보수·수당업무처리지침(2003년 - 행정자치부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·하수·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월 15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임.
-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보수 수당업무처리 지침에 준하여 개정하였으며 동 지침은 27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음.